

미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안내

지난 2018. 2. 28일, 「가축분뇨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고 ‘부처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18.3.9) 시행에 따라,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환경과)에 약 40,000 농가가 제출하였습니다.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께서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별도양식) 및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 증빙)’를 관할 시·군·구(환경과)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부처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한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해당 농가에 민원 기한(7일) 내에 보완 요구내용(상기 서류 2종 제출 등)을 통보

또한, 정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시, 해당 시·군·구 ‘적법화 전담 T/F’에서 이행계획서 평가 후 해당 농가별로 이행기간(최장 1년+a)을 결정하여 통보(9.24일 이후 14일 이내)키로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의 적정 이행기간 설정을 위해 ‘유형별 이행기간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협회가 소속단체로 활동 중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적법화 불가요인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국회에 50여개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고, 대정부 및 대국회 농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후 중앙부처의 제도개선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즉시 회원농가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에 회원농가 분들께서는 붙임의 절차 및 양식을 적극 참고하시어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

